

청주 푸르지오 씨엘리체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 정정 안내

1. 라이프업 스타일링 옵션(유상)
 2) 벽/바닥 마감재 특화 -53p-

(단위 : 원, VAT 포함)

기 존							
구분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벽/바닥 마감재 특화	1. 벽 : 거실 아트월 타일(600*1200) +실크벽지	1. 벽 : 거실 세라믹 아트월 +안티스크래치 기능성 벽지(천장제외)	84A	5,698,000	569,800	5,128,200	
			114A	4,994,000	499,400	4,494,600	
		3. 바닥 : 광폭 강마루(섬유판)					
	2. 바닥 : 강마루(섬유판)	1. 벽 : 거실 세라믹 아트월 +안티스크래치 기능성 벽지(천장제외)	84B	4,411,000	441,100	3,969,900	
			84C	6,886,000	688,600	6,197,400	
			114B	6,105,000	610,500	5,494,500	
			114C	5,588,000	558,800	5,029,200	

(단위 : 원, VAT 포함)

정 정							
구분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벽/바닥 마감재 특화	1. 벽 : 거실 아트월 타일(600*1200) +실크벽지	1. 벽 : 거실 세라믹 아트월 +안티스크래치 기능성 벽지(천장제외)	84A	5,698,000	569,800	5,128,200	
			114A	6,886,000	688,600	6,197,400	
		3. 바닥 : 광폭 강마루(섬유판)					
	2. 바닥 : 강마루(섬유판)	1. 벽 : 거실 세라믹 아트월 +안티스크래치 기능성 벽지(천장제외)	84B	4,994,000	499,400	4,494,600	
			84C	4,411,000	441,100	3,969,900	
			114B	6,105,000	610,500	5,494,500	
			114C	5,588,000	558,800	5,029,200	

5. 라이프업 버스 옵션(유상)

1) 욕실 특화 -64p-

(단위 : 원, VAT 포함)

기 존							
구분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시)	
욕실 특화	1. 벽:타일(300*600/국산) /바닥:타일(300*300/국산) 2. 국산 수전 3. 국산 도기 4. 기본형 ACC 5. 기본형 샤워부스(욕실1) /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욕실2)	1. 벽:대형타일(600*1,200/유럽산) /바닥:타일(300*600/유럽산) 2. 수전 : 국산 (고급형, 색상특화) 3. 도기 : 외산 (파포니) 4. 욕조 측면 타일 마감 (욕실1) 5. 액세서리류 색상특화 / 샤워부스 프레임 색상특화(욕실1) / 욕조 에이프런 타일 마감(욕실2)	84A,B,C	4,829,000	482,900	4,346,100	
			114A,B,C	5,269,000	526,900	4,742,100	

(단위 : 원, VAT 포함)

정 정							
구분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시)	
욕실 특화	1. 벽:타일(300*600/국산) /바닥:타일(300*300/국산) 2. 국산 수전 3. 국산 도기 4. 기본형 ACC 5. 기본형 샤워부스(욕실1) /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욕실2)	1. 벽:대형타일(600*1,200/유럽산) /바닥:타일(300*600/유럽산) 2. 수전 : 국산 (고급형, 색상특화) 3. 도기 : 외산 (파포니) 4. 욕조 측면 타일 마감 (욕실2) 5. 액세서리류 색상특화 / 샤워부스 프레임 색상특화(욕실1) / 욕조 에이프런 타일 마감(욕실2)	84A,B,C	4,829,000	482,900	4,346,100	
			114A,B,C	5,269,000	526,900	4,742,10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청주시 거주자		충청북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4.10.(금)	2026.04.20.(월)	2026.04.21.(화)	2026.04.22.(수)	2026.04.30.(목)	2026.05.02.(토) ~ 2026.05.06.(수)	2026.05.11.(월) ~ 2026.05.14.(목)

1

공통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566-8982) 및 공식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6/cieliche)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상담전화 연결이 안될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등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에 따른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6/cieliche>)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일부 은행에 한하여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10.(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4.20.(월)	2026.04.21.(화)	2026.04.22.(수)	2026.04.30.(목)	2026.05.02.(토) ~ 2026.05.06.(수)	2026.05.11.(월) ~ 2026.05.14.(목)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12-3번지) ■ 문의 : ☎1566-8982 ※ 자격확인서류 및 예약관련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참고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 접수된 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3: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 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 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본 주택의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은 「주택법」 제64조제1항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 3]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공급되는 본 주택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비규제지역이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 3]의 규정 중 제5호나목에 따릅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 단,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합니다.)
- 향후 1순위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주택과 - 15325호(2026.04.0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54-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총 1,351세대
[특별공급 472세대(기관추천 81세대, 다자녀가구 132세대, 신혼부부 147세대, 노부모부양 39세대, 생애최초 7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타입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6000087	1	084.9904A	84A	84.9904	23.4149	108.4053	66.2037	174.6091	47.6109	491	49	49	88	15	44	245	246	18
	2	084.9263B	84B	84.9263	23.9456	108.8719	66.1537	175.0257	47.5750	164	16	16	29	4	14	79	85	6
	3	084.9403C	84C	84.9403	23.5148	108.4551	66.1646	174.6198	47.5828	168	16	16	30	5	15	82	86	6
	4	114.9039A	114A	114.9039	30.7113	145.6152	89.5050	235.1201	64.3681	316	0	31	0	9	0	40	276	11
	5	114.9508B	114B	114.9508	31.2618	146.2126	89.5415	235.7541	64.3944	104	0	10	0	3	0	13	91	3
	6	114.7078C	114C	114.7078	30.7192	145.4270	89.3522	234.7792	64.2583	108	0	10	0	3	0	13	95	4
합 계										1,351	81	132	147	39	73	472	879	4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약식 표기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공 급 금 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 (계약일)	2차 (계약 후 1개월 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지정일	
									2026.11.10.	2027.05.10.	2027.10.10.	2028.03.10.	2028.07.10.	2028.11.10.		
84A	1층	10	149,779,200	314,220,800	-	464,000,000	10,000,000	3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139,200,000
	2층	18	153,330,000	321,670,000	-	475,000,000	10,000,000	3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142,500,000
	3층	18	156,558,000	328,442,000	-	485,000,000	10,000,000	3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145,500,000
	4층	18	159,786,000	335,214,000	-	495,000,000	10,000,000	3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148,500,000
	5-9층	90	163,336,800	342,663,200	-	506,000,000	10,000,000	4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151,800,000
	10-19층	180	166,564,800	349,435,200	-	516,000,000	10,000,000	4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154,800,000
	20층이상	157	168,178,800	352,821,200	-	521,000,000	10,000,000	4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156,300,000
84B	1층	5	146,874,000	308,126,000	-	455,000,000	10,000,000	3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136,500,000
	2층	6	150,102,000	314,898,000	-	465,000,000	10,000,000	3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139,500,000
	3층	6	153,330,000	321,670,000	-	475,000,000	10,000,000	3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142,500,000
	4층	6	156,558,000	328,442,000	-	485,000,000	10,000,000	3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145,500,000
	5-9층	30	159,786,000	335,214,000	-	495,000,000	10,000,000	3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148,500,000
	10-19층	60	163,014,000	341,986,000	-	505,000,000	10,000,000	4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151,500,000
	20층이상	51	164,628,000	345,372,000	-	510,000,000	10,000,000	4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53,000,000
84C	1층	5	148,488,000	311,512,000	-	460,000,000	10,000,000	3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138,000,000
	2층	6	151,716,000	318,284,000	-	470,000,000	10,000,000	3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141,000,000
	3층	6	154,944,000	325,056,000	-	480,000,000	10,000,000	3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144,000,000
	4층	6	158,494,800	332,505,200	-	491,000,000	10,000,000	3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147,300,000
	5-9층	30	161,722,800	339,277,200	-	501,000,000	10,000,000	4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150,300,000
	10-19층	60	164,950,800	346,049,200	-	511,000,000	10,000,000	4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153,300,000
	20층이상	55	166,564,800	349,435,200	-	516,000,000	10,000,000	4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154,800,000
114A	1층	6	181,059,730	379,945,700	37,994,570	599,000,000	10,000,000	4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179,700,000
	2층	12	184,989,240	388,191,600	38,819,160	612,000,000	10,000,000	5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183,600,000

	3층	12	189,221,020	397,071,800	39,707,180	626,000,000	10,000,000	5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187,800,000
	4층	12	193,150,530	405,317,700	40,531,770	639,000,000	10,000,000	5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191,700,000
	5-9층	60	197,080,040	413,563,600	41,356,360	652,000,000	10,000,000	5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195,600,000
	10-19층	120	201,311,820	422,443,800	42,244,380	666,000,000	10,000,000	5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199,800,000
	20층이상	94	204,032,250	428,152,500	42,815,250	675,000,000	10,000,000	5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202,500,000
114B	1층	2	176,525,680	370,431,200	37,043,120	584,000,000	10,000,000	4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175,200,000
	2층	4	179,850,650	377,408,500	37,740,850	595,000,000	10,000,000	4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178,500,000
	3층	4	184,384,700	386,923,000	38,692,300	610,000,000	10,000,000	5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83,000,000
	4층	4	188,918,750	396,437,500	39,643,750	625,000,000	10,000,000	5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187,500,000
	5-9층	20	192,848,260	404,683,400	40,468,340	638,000,000	10,000,000	5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191,400,000
	10-19층	40	197,080,040	413,563,600	41,356,360	652,000,000	10,000,000	5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195,600,000
	20층이상	30	199,800,470	419,272,300	41,927,230	661,000,000	10,000,000	5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198,300,000
114C	1층	3	178,641,570	374,871,300	37,487,130	591,000,000	10,000,000	4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177,300,000
	2층	3	182,268,810	382,482,900	38,248,290	603,000,000	10,000,000	5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60,300,000	180,900,000
	3층	4	186,198,320	390,728,800	39,072,880	616,000,000	10,000,000	5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184,800,000
	4층	4	191,034,640	400,877,600	40,087,760	632,000,000	10,000,000	5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189,600,000
	5-9층	20	194,964,150	409,123,500	40,912,350	645,000,000	10,000,000	5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193,500,000
	10-19층	40	198,893,660	417,369,400	41,736,940	658,000,000	10,000,000	5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197,400,000
	20층이상	34	201,916,360	423,712,400	42,371,240	668,000,000	10,000,000	5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200,400,000

■ 공통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

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중 발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연체로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로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 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멸기간 이내에 소멸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원본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본 제출 불가)
-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및 선정순위 등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 (약식표기)		84A	84B	84C	114A	114B	114C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철거주택 소유자	14	1	0	0	0	0	15
	국가유공자	4	2	2	0	0	0	8
	장기복무 제대군인	4	2	3	0	0	0	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3	3	0	0	0	9
	중소기업 근로자	12	4	4	0	0	0	20
	장애인	12	4	4	0	0	0	2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9	16	16	31	10	10	132
신혼부부 특별공급		88	29	30	0	0	0	14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5	4	5	9	3	3	39
생애최초 특별공급		44	14	15	0	0	0	73
합 계		245	79	82	40	13	13	47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국가유공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 특별공급 공통 사항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p>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p> <p>※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p>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p>무주택 요건</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p>청약통장 자격요건</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 분</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width: 25%;">그 밖의 광역시</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청약이 불가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 전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거주택 소유자 : 사업주체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충청북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북도 거주자)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충청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단계</th> <th style="width: 30%;">소득구분</th> <th style="width: 55%;">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2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하여야 함)</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10%)</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하여야 함)</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2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하여야 함)</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0%)</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하여야 함)</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p>※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순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순위</th> <th style="width: 85%;">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2순위</td> <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 </tr> </tbody> </table>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북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 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4.1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비고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당첨제 청약신청자 중 출산특례(기존 주택 처분 조건)로 당첨된 경우 처분 대상 주택의 가액은 부동산가액 산정 시 합산하지 않음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계속적인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기 전인 경우라면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북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 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data-bbox="271 991 2087 1473"> <thead> <tr> <th data-bbox="271 991 499 1027">단계</th> <th data-bbox="499 991 831 1027">소득구분</th> <th colspan="2" data-bbox="831 991 2087 1027">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71 1027 499 1102">1단계</td> <td data-bbox="499 1027 831 1102">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 colspan="2" data-bbox="831 1027 2087 110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 data-bbox="271 1102 499 1177">2단계</td> <td data-bbox="499 1102 831 1177">신생아 일반공급 (5%)</td> <td colspan="2" data-bbox="831 1102 2087 1177">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data-bbox="271 1177 499 1252">3단계</td> <td data-bbox="499 1177 831 1252">우선공급 (35%)</td> <td colspan="2" data-bbox="831 1177 2087 125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 data-bbox="271 1252 499 1327">4단계</td> <td data-bbox="499 1252 831 1327">일반공급 (15%)</td> <td colspan="2" data-bbox="831 1252 2087 1327">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data-bbox="271 1327 499 1473" rowspan="2">5단계</td> <td data-bbox="499 1327 831 1473" rowspan="2">추첨공급</td> <td data-bbox="831 1327 1122 1402">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 data-bbox="1122 1327 2087 140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 data-bbox="831 1402 1122 1473">1인 가구</td> <td data-bbox="1122 1402 2087 1473">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북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4.1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비고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계속적인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기 전인 경우라면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73 619 2029 849">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그 밖의 광역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02㎡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3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든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청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북도 거주자) ■ ②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border="1" data-bbox="273 1283 2060 146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가점제</th> <th style="text-align: center;">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85㎡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용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p>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p>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 외국인 직계존속</p> <p>-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p>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p>-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p> <p>-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p>-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p> <p>-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62 28 481 108">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td> <td data-bbox="481 28 2105 108">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td> </tr> <tr> <td data-bbox="262 108 481 212">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td> <td data-bbox="481 108 2105 212">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분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td> </tr> </table> <p> ■ ②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p>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분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분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비고	<p>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p> <p> ■ 가점제 입주자 선정시 유의사항 - 접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p> <p> ■ 청약접수 방식 - 주택형태로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 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주택 전체(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입주자저축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된 분은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p>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 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6.04.20.(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청주 푸르지오 씨엘리체 견본주택 : 10:00~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주 푸르지오 씨엘리체 견본주택(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12-3번지(☎1566-8982)
일반 공급	1순위	2026.04.21.(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6.04.22.(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람,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람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3: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 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p>청약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4.30.(목)~2026.05.09.(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p>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6.04.30.(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계약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 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6.04.30.(목)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톡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6.05.11.(월) ~ 2026.05.14.(목), 4일간(10:00~17:00) • 장소 : 청주 푸르지오 씨엘리체 견본주택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12-3번지) • 문의 : ☎1566-8982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당첨자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예비입주자) 선정 및 유의사항

구분	선정 방법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합니다.(단,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 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며,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합니다.(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별도 통지)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규제지역 내 1순위 청약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당첨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6.05.02.(토) ~ 2026.05.06.(수) (5일간) 10: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 푸르지오 씨엘리체’ 견본주택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12-3번지(☎1566-8982)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 서류는 반드시 지참
예비입주자 서류제출(특별공급 /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0.)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서류 공통 유의사항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대상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신청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으로, 별도 안내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첨 및 계약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청약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르거나 관련 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제출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소명자료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으로 청약 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사전 통지 후 계약체결 전까지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당일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 자료 제출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소명시에도 부적격자임이 확인되어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자격검증이 불가할 경우 단순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분류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구비서류 안내

-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제반 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등 추가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등 본인/대리 발급이 구분되는 서류의 경우 본인 발급용이 아닌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주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자격 확인 공통 제출서류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 비치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 건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 (신청자용)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기준: 본인발급/ 발급용도: 특별공급 신청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전자인감증명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인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전체 포함"하여 발급(본인 및 세대원등 모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와의 혼인사항 및 상세내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자의 경우 미제출 ※ 개명 사실이 있는 경우 개명전 출입국사실증명원 제출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제외)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명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신분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출입국사실증명원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주택소유여부 확인용)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전체 포함"하여 발급(본인 및 세대원등 모두)
	○		복무확인서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재학증명서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및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출산특례로 당첨되고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가 기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작성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장이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추천명부로 대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비치 ※ 배점검산용 •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 (출산 한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출산이행 확인각서			
		○	입양관계 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3세대 구성시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의 배우자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전체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가점 산정 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비치 ※ 가점검산용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했을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생년월일~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Y로 설정하여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원본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1년 이내 계속하여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발급기간: 생년월일~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Y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소득산정대상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건본주택 비치)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 중인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하는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전원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 성명, 주민등록번호(뒤자리포함)표시로 발급
		○	소득증빙서류	및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전원의 소득입증서류포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무직자 (전년도 1월 1일부터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부동산>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세대원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전체)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1년 이상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전체 포함”하여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공급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태아인 경우 임신진단서로 대체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이상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산정대상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건본주택 비치)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 통산하여5개년도 납부 입증서류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진단서(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출산이행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중인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전원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뒤자리포함)표시로 발급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전원의 소득입증서류포함)
		○	비사업자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직자 (전년도 1월 1일부터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부동산)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세대원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전체)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1년 이상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자녀로 신청한 경우 또는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태아인 경우 임신진단서로 대체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 미혼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일반공급 (가점제당첨자 및 가점제 예비입주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청약홀) 청약홀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주민등록표초본(전체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전세사기 피해자		○	임대차계약서	본인 또는 세대원	해당 임대주택, 사본 제출	전세사기 피해자 낙찰주택(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대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을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낙찰증빙서류 등기사항 증명서			
			채권자 확인서류		해당 임대주택, 원본 제출	
					- 낙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①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②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 됨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및직계존비속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발급기준 : 본인발급 / 발급용도: 대리인 위임용 ※전자인감증명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인정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직인날인)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해당 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①, 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거주자의 사업 기타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원본)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사업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전년도 재무재표 ⑤ 원천징수이행명세서(또는 배당금 지급명세서 또는 배당금 원천징수영수증)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 ②, ④ 해당직장 ③, ⑤ 세무서 ⑥ 등기소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간이지급명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팩스불가) ③ 위촉(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프리랜서의 경우 위촉(해촉)증명서 추가 제출(해당 직장 직인 날인)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전년도 1월 1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건분주택 비치 ② 세무서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 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및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0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포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④ 해당직장, 세무서

- 상기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모든 입증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는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통산 5년의 납부실적)이며,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 상기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0.)** 이후 발행분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하며 세대원 전원에게 대해 각각 발급)

해당자적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소유 부동산 확인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 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등 부동산 대상)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필수	소유 부동산의 금액 확인	① 공동(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이택스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시가 확인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내역"을 발급받아 건물시가를 확인가능	①,②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해당자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미성년자 포함 세대원 전원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주민센터 방문 전국통합 발급 요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 또는 미과세증명서(전국 통합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 * 위택스 → 발급 → 문서 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택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출산특례를 사용한 당첨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는 경우, 자산가액(부동산가액) 산정 시 해당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고 산정 가능합니다.

※ 보유중인 부동산이 없는 경우 : 세대원(미성년자 포함) 전원 제출

1.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신청 결과 화면 캡처본 출력 후 제출 (단, 공동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해당 화면을 구현하여야 인정됨.)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 재산세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해당 시청, 구청,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4.10.)**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문의 전화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일반공급)	2026.05.11.(월) ~2026.05.14.(목) 10: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 푸르지오 씨엘리체’ 견본주택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12-3번지 ※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청주 푸르지오 씨엘리체’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b/2026/cieliche)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1566-8982
예비 입주자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예비입주자 일정은 정당계약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1차 계약금	새마을금고	9002-2067-5467-4	주식회사코람코자산신탁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번호 부여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차 계약금 납부 : 1차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 : 계약 체결 시 세대별 부여(공급계약서에 명기)되는 가상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가상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모계좌(새마을금고, 9002-2067-5467-4, 주식회사코람코자산신탁)로 입금되어 관리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발코니확장대금 계좌, 추가 선택품목대금 계좌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불가)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필요)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인감도장	본인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시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본인	• 「인지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발급 후 사본 제출 - 아파트 공급계약서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 계약자 부담액 : 10억원 이하 7만5천원(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 발코니 확장계약서 수입인지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 계약자 부담액 : 3천만원 이하 1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만5천원(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 수입인지 구입처 1.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2.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접수 장소에 비치 •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부동산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필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자격 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당첨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시 대리인 접수 또는 대리인 계약 불가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불가)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필요)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해당서류	확인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금액 : 계약서 기재 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부동산 거래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름)

대상증서	공급계약서,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계약서,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계약서)					
납부기한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					
납부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금액	계약서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및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전매 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에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 기준(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 ※ 공급계약서, 중간 전매계약서, 최종 전매계약서는 각각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전매 할 때마다 인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p>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 시 필요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p>입주대상자 자격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 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 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 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2의2. 제28조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당첨된 경우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특례 제외) 4. 제5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p>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 및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번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 별도의 지급이자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 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 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p>기타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저축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원,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추가선택품목(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청약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 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남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계약자는 계약금 완납 후 사업주체 등이 알선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 등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등이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등이 알선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이자납부일을 의미함)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대납종료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등이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법인은 중도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등이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가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등이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이자납입일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이자납입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등이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발코니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에 대한 공급대금 및 연체료 등을 완납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기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건본주택(분양사무소)은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주택은「주택법」 제64조제1항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 3]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에 공급되는 본 주택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비규제지역이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 3]의 규정 중 제5호나목에 따릅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 제한기간	없음	

- 단,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매기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청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주택법」제48조의2「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9년 3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쟁,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기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관리비예치금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수영장,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라운지스튜디오(독서실), 샤워실(사우나) 등],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경로당(시니어클럽소), 옥외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으로 구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①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원,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84A	18,500,000	1,850,000	16,650,000	
84B	18,000,000	1,800,000	16,200,000	
84C	21,000,000	2,100,000	18,900,000	
114A	24,000,000	2,400,000	21,600,000	
114B	22,000,000	2,200,000	19,800,000	
114C	26,000,000	2,600,000	23,400,000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할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일괄확장(일부 실 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의 위치 등은 '청주 푸르지오 씨엘리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10.02.18. 개정 시행)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자재발주, 공정관리 등의 사유로 변경계약 등은 불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 부의 외부창호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창호 및 도어시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고 이에 따른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형(비확장)세대의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비확장(기본형) 선택 시 발코니 내측에는 이중창호, 발코니 외측에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설치 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청주 푸르지오 씨엘리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 등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환기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인접 세대가 발코니 확장 세대인 경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벽 및 천장, 바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의 면적 및 높이가 축소될 수 있고, 발코니 출입 창호 하부턱이

설치되어 창호 높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에 인접한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의 발코니 벽 및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의 면적 및 높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인접 세대의 발코니 확장 선택 유무는 통보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 등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본공사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시공함으로써 소음, 진동, 본진 등이 발생되어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시공할 경우 난방장비 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조적벽체 또는 경량벽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외부창호는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색상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홍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의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창호 설치 기준은 '청주 푸르지오 씨엘리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공사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외부창호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크기, 개폐방식, 개폐방향, 난간, 재료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창호 주변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해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10%_계약시)	새마을금고	9002-2087-9768-8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잔금 (90%_입주시)	세대별 가상계좌번호 부여		

- 상기 계좌는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납부계좌, 추가선택품목대금 계좌와 상이하오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 불가)
- 발코니 확장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통장입금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발코니 확장 잔금은 계약 체결 시 세대별 부여(공급계약서에 명기)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가상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모계좌(새마을금고, 9002-2087-9768-8, 주식회사코람코자산신탁)로 입금되어 관리됩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택 가능한 품목입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 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적용·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제품의 고유특성, 가공 등으로 색상, 패턴, 나누기 등이 견본주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사의 도산 등 공급여건에 따라 모델, 사양, 디자인 등의 변경, 동급이상 제품 또는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대금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10%_계약시)	새마을금고	9002-2087-9775-4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잔금 (90%_입주시)	세대별 가상계좌번호 부여		

- 상기 계좌는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납부계좌, 발코니 확장대금 계좌와 상이하오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통장입금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추가 선택품목 잔금은 계약 체결 시 세대별 부여(공급계약서에 명기)되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가상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모계좌(새마을금고, 9002-2087-9775-4, 주식회사코람코자산신탁)로 입금되어 관리됩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라이프업 스타일링 옵션(유상)

1) 현관중문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현관중문	미설치	원 슬라이딩 자동중문 + 시트판넬	84A	2,266,000	226,600	2,039,400	
			84B	2,046,000	204,600	1,841,400	
			84C	2,079,000	207,900	1,871,100	
			114A	2,046,000	204,600	1,841,400	
			114B	2,189,000	218,900	1,970,100	
			114C	2,112,000	211,200	1,900,800	

- 상기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택 가능합니다.
- 현관중문은 자동형으로 현관에서 세대로 진입 시 자동으로 열리며, 세대에서 나갈 시에는 별도의 버튼으로 작동하며 개별적인 속도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 본 공사 시 센서 및 버튼의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 시 공간 상의 이유로 배선기구, 스프링클러, 환기디퓨저, 화재감지기, 조명기구의 배치 및 수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시트판넬 적용 부위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벽/바닥 마감재 특화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벽/바닥 마감재 특화	1. 벽 : 거실 아트월 타일(600*1200) +실크벽지	1. 벽 : 거실 세라믹 아트월 +안티스크래치 기능성 벽지(천장제외)	84A	5,698,000	569,800	5,128,200		
		2. 복도/쇼파뒷벽 시트판넬 +복도/쇼파뒷벽간접등	114A	6,886,000	688,600	6,197,400		
	2. 바닥 : 강마루(섬유판)	3. 바닥 : 광폭 강마루(섬유판)	1. 벽 : 거실 세라믹 아트월 +안티스크래치 기능성 벽지(천장제외)	84B	4,994,000	499,400	4,494,600	
				84C	4,411,000	441,100	3,969,900	
			2. 복도 시트판넬+복도 간접등	114B	6,105,000	610,500	5,494,500	
			3. 바닥 : 광폭 강마루(섬유판)	114C	5,588,000	558,800	5,029,200	

- 상기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택 가능합니다.
- 벽 마감재 옵션 중 안티스크래치 벽지는 도배지가 시공되는 벽 부분에 해당되며, 천장은 제외됩니다.
- 본공사 시 강마루(섬유판) 및 광폭 강마루(섬유판) 제조사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마감재 두께에 따른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부위별로 규격, 나누기, 시공 상세 등이 상이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 및 평면옵션에 따라 시공부위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복도 및 쇼파뒷벽의 시트판넬은 설치되지 않으며, 벽지로 마감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간접조명 및 등박스의 규격 및 상세, 형태, 이격거리는 본 공사 시 마감품질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시트판넬은 벽체에 시공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라믹타일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나누기 및 패턴,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조명 특화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시)		
조명 특화	1. 기본 조명기구 2. 스마트스위치 일반형	기본	특화조명기구 : 거실 특화조명+썰링팬+침실엠티등+스마트 스위치 고급형	84A	2,420,000	242,000	2,178,000	
		기본	특화조명기구 : 거실 특화조명+식탁등 특화+썰링팬+침실엠티등+스마트 스위치 고급형	84B	3,069,000	306,900	2,762,100	
		기본	특화조명기구 : 거실 특화조명+식탁등 특화+썰링팬+침실엠티등+스마트 스위치 고급형	84C	3,267,000	326,700	2,940,300	
		[침실2,3+알파룸] 특화	특화조명기구 : 거실 특화조명+식탁등 특화+썰링팬+침실엠티등+스마트 스위치 고급형 (침실2,3+알파룸 선택시 매입등으로 변경됨)		3,058,000	305,800	2,752,200	
		기본	특화조명기구 : 거실 특화조명 + 썰링팬 + 침실엠티등 + 스마트 스위치 고급형	114A	2,893,000	289,300	2,603,700	
		[안방] 특화	특화조명기구 : 거실 특화조명+썰링팬+침실엠티등+스마트 스위치 고급형 (안방 특화시 알파룸 매입등으로 변경됨)		2,673,000	267,300	2,405,700	
		[침실4] 특화	특화조명기구 : 거실 특화조명+썰링팬+침실엠티등+스마트 스위치 고급형 (침실4 특화시 침실4 매입등으로 변경됨)		2,673,000	267,300	2,405,700	
		[안방/침실4] 특화	특화조명기구 : 거실 특화조명+썰링팬+침실엠티등+스마트 스위치 고급형 (안방 특화 및 침실4 특화시 알파룸 및 침실4 매입등으로 변경됨)	114B	2,464,000	246,400	2,217,600	
		기본	특화조명기구 : 거실 특화조명+식탁등 특화+썰링팬+침실엠티등+스마트 스위치 고급형		3,608,000	360,800	3,247,200	
		[비스포크스튜디오]	특화조명기구 : 거실 특화조명+식탁등 특화+썰링팬+침실엠티등+스마트 스위치 고급형 (비스포크스튜디오 선택시 침실2 매입등으로 변경됨)	114C	3,421,000	342,100	3,078,900	
		기본	특화조명기구 : 거실 특화조명+식탁등 특화+썰링팬+침실엠티등+스마트 스위치 고급형		3,773,000	377,300	3,395,700	
		[비스포크스튜디오]	특화조명기구 : 거실 특화조명+식탁등 특화+썰링팬+침실엠티등+스마트 스위치 고급형 (비스포크스튜디오 선택시 침실2 매입등으로 변경됨)	114C	3,564,000	356,400	3,207,600	
[침실3,4/알파룸] 특화	특화조명기구 : 거실 특화조명+식탁등 특화+썰링팬+침실엠티등+스마트 스위치 고급형 (침실3,4+알파룸 특화시 알파룸 매입등으로 변경됨)	3,564,000	356,400		3,207,600			
[비스포크/침실3,4/알 파룸] 특화	특화조명기구 : 거실 특화조명+식탁등 특화+썰링팬+침실엠티등+스마트 스위치 고급형 (비스포크+침실3,4+알파룸 특화시 침실2,알파룸 매입등으로 변경됨)	3,355,000	335,500		3,019,500			

- 상기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택 가능합니다.
- 조명 특화 선택에 따라 등기구 위치 및 수량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 특화 선택형(2안)의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1안)은 기본 조명기구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조명 특화 선택형(2안)의 침실 등의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은 하부면을 비추는 조명 부분만 제공됩니다.
- 조명 특화 선택형(2안)은 디밍과 색온도 제어가 가능한 플터치 고급형 스마트스위치(거실, 주방 제외)가 제공됩니다. 기본형(1안)은 조명ON/OFF 기능만 가능한 일반 스마트스위치가 제공됩니다.
- 조명 특화 선택형(2안)의 고급형 스마트스위치 중 거실, 주방은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의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스위치의 설치 위치에 따라 스마트스위치의 기능 및 형태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안내 되어 있는 일반형 스마트스위치의 POP 이미지는 샘플 이미지이며, 공간 및 조명 회로에 따라 버튼 수량은 상이합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전자스위치, 전기/통신단자함 등의 설치위치, 설치수량, 제품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옵션형(2안) 선택 시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가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카달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급형 스마트 스위치의 음성인식 기능은 침실에 한해서 구현 가능합니다.
- 조명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B,C타입의 경우 조명특화 옵션시 식탁등은 미설치되며, 회로가 구분된 거실에서부터 이어지는 트랙매입등에 원통형 조명이 설치됩니다.
- 조명 특화 선택형(2안) 선택시 실링팬이 설치되며 제품특성, 천장구조 등에 따라 소음, 진동, 떨림, 바람의 체감 정도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용 환경에 따라 체감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의 제기 및 변경 요구는 불가하오니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스포크스튜디오, 침실 수납 옵션 선택에 따라 침실 및 알파룸에 다운라이트 적용시 디밍/색온도 제어가 불가하며, 스마트스위치 또한 디밍/색온도 제어가 불가한 제품이 설치됩니다.
- 조명 특화 선택형(2안) 선택시 실링팬이 설치되며 제품특성, 천장구조 등에 따라 소음, 진동, 떨림, 바람의 체감 정도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용 환경에 따라 체감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의 제기 및 변경 요구는 불가하오니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링팬은 무선리모컨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4) 다용도실 특화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시)	
다용도실 특화	습식 다용도실 1. 바닥 타일(300X300) 2. 손빨래수전	건식 다용도실 1. 바닥레벨 변경 및 대형타일 (600X600, 세탁기 설치 부위 제외) 2. 로봇청소기 급수용 공배관 추가 3. 손빨래 수전 삭제	전타입	110,000	11,000	99,000	

- 상기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택 가능합니다.
- 다용도실 특화 선택형(2안)은 발코니2 위치에 설치되는 품목입니다.
- 타입별로 발코니2 레이아웃에 따라 바닥레벨 변경 구간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시 세탁기 설치부위는 바닥 레벨이 다운되어 설치되며 바닥대형타일 적용구간은 주방과 동일한 레벨로 시공됩니다.
-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바닥 난방 구간이 상이하며, 로봇청소기 급수용 공배관의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2. 라이프업 수납 옵션(유상)

1) 현관 수납특화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시)	
현관수납 특화	1. 신발장 : 기본형 2. 현관창고 : 가구도어(여닫이) +폴대형 시스템선반 3. 현관바닥: 타일 (600X600)	1. 신발장 특화: 장식장(조명포함)+디자인선반(조명포함)+신발장 하부조명 2. 현관창고 : 폴딩도어+디자인 선반(조명포함) 3. 현관바닥 : 대형 타일(600X1,200)	84A	2,849,000	284,900	2,564,100	
			84B	2,838,000	283,800	2,554,200	
			84C	2,783,000	278,300	2,504,700	
			114A	2,893,000	289,300	2,603,700	
			114B	2,926,000	292,600	2,633,400	
			114C	3,025,000	302,500	2,722,500	

- 상기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택 가능합니다.
- 현관 수납특화 기본형(1안)의 현관창고 내 설치되는 폴대형 시스템선반은 확장시에만 제공됩니다.
- 디자인선반(조명포함)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현관 가구 조명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신발장 상단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 및 규격, 특화사항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선택 시, 조명에 대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수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폴대형 시스템선반이 설치되며, 현관창고 내부는 벽지로 마감됩니다.
- 현관 수납 특화 옵션형(2안) 선택에 따라 도어 사이즈 및 선반 구성과 개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드레스룸 특화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시)	
드레스룸 특화	1. 파우더장 2. 드레스룸: 가구도어(여닫이) +폴대형 시스템선반	드레스룸 통합 1. 포켓도어+시트판넬 2.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수납장 3. 천장형 제습기+조명 특화	84A	3,828,000	382,800	3,445,200	
		드레스룸 통합 1. 포켓도어+시트판넬 2.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 3. 천장형 제습기+조명 특화	84B	5,478,000	547,800	4,930,200	
	1. 파우더장 2. 드레스룸: 포켓도어 +폴대형 시스템선반	드레스룸 통합 1. 포켓도어+시트판넬 2.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 3. 천장형 제습기+조명 특화	84C	3,256,000	325,600	2,930,400	
	1. 파우더장 2. 드레스룸: 가구도어(여닫이) +폴대형 시스템선반	드레스룸 통합 1. 포켓도어+시트판넬 2.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디자인 불박이 장(조명포함)+아일랜드 서랍장 3. 천장형 제습기+조명 특화	114A	6,182,000	618,200	5,563,800	
	1. 파우더장 2. 드레스룸: 가구도어(여닫이) +폴대형 시스템선반	드레스룸 통합 1. 포켓도어+시트판넬 2.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디자인 불박이 장 (조명포함)+파우더장 3. 천장형 제습기+조명 특화	114B 114C	7,403,000 7,491,000	740,300 749,100	6,662,700 6,741,900	

- 상기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택 가능합니다.
-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의 파우더장 및 드레스룸(여닫이도어 + 폴대형 시스템선반)은 확장시에만 제공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의 드레스룸 내부는 도배지로 마감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은 천장형 제습기가 포함됩니다(가야 KY-1005P).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에 따라 포켓도어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디자인 시스템선반은 조명포함 디자인이며, 레이아웃에 따라 설치 수량 및 위치가 상이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별로 가구 및 선반의 위치와 구성이 상이하며, 미건립타입은 공간에 따라 선반 수납량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의 디자인 시스템선반 구성품 중 유리조명 선반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은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미선택시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 및 천장형 제습기 전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관련 조명기구 SPEC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드레스룸(천장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천장형) 제습기는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실의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 드레스룸(천장형) 제습기는 '드레스룸 특화' 선택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 선택시, 천장형 제습기에 대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드레스룸 제습기(드레스룸 특화 미선택 시)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시)	
드레스룸 제습기	미설치	천장형 제습기 (가야/KY-1005P)	전타입	830,000	83,000	747,000	

- 상기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택 가능합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 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적용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천장형) 제습기는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시 함께 설치되는 품목으로 중복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드레스룸(천장형) 제습기는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 선택시 개별 선택이 가능합니다.
- 드레스룸(천장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천장형) 제습기는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실의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 드레스룸(천장형) 제습기는 '드레스룸 특화' 선택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 선택시, 천장형 제습기에 대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침실 수납특화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시)	
침실수납 특화	미설치	침실 불박이장 1개소	114A	1,001,000	100,100	900,900	
		침실 매립형 불박이장 2개소	84A	2,211,000	221,100	1,989,900	
			84B	2,211,000	221,100	1,989,900	
			114B	2,354,000	235,400	2,118,600	
		침실/알파룸 통합 : 포켓도어+ 침실 공들+ 침실 매립형 불박이장 2개소	84C	3,234,000	323,400	2,910,600	
		114C	3,300,000	330,000	2,970,000		

- 상기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택 가능합니다.
- 침실 매립형 불박이장 선택형(2안) 선택 시, 침실의 가로폭 사이즈가 줄어들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 매립형 불박이장 선택형(2안) 선택 시 침실2, 침실3 또는 침실3, 침실4에 공통 적용되며(타입별 실명 상이), 개별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침실 매립형 불박이장 선택형(2안) 선택 시 침실의 문, 스위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매립형 불박이장 선택 시 설치되는 가구의 규격, 상세,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 침실 치수에 따라 가구 상세 사이즈는 상이합니다.

- 84C, 114C타입은 침실 매립형 불박이장 선택시(2안) 침실과 알파룸이 통합되면서 알파룸 포켓도어가 설치되며, 기존 침실 목창호는 공틀로 변경되어 설치됩니다.
자세한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라이프업 키친 옵션(유상)

1) 주방 특화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3안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시)		
주방 특화	1. 기본형 주방가구 2. [벽]타일(300*600)+[상판]인조대리석 3. 국산 싱크수전+싱크볼 4. 침니형 렌지후드+가스쿡탑 5. 걸이형 액세서리 6. 기본 조명기구 7. [팬트리]가구(여닫이)+풀대형시스템선반	2안	-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84A	1,023,000	102,300	920,700	
		3안	1. [주방특화] 플랩 상부장+상부장 하부조명+액세서리특화(서랍장/미드웨이) 2. [벽/상판] 세라믹타일 3. 외산 싱크수전(한스그로헤)+절곡형 싱크볼 4. 독립형 렌지후드+인덕션(일반형) 5. [특화 조명기구] 주방 우물천장+주방 슬림라인등+식탁레일등 6. [팬트리 특화] AL슬라이딩도어+수납가구 특화+시트판넬	84A	7,128,000	712,800	6,415,200	
		2안	-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84B	913,000	91,300	821,700	
		3안	1. [주방특화] 플랩상부장+상부장 하부조명+액세서리 특화(미드웨이) 2. [아일랜드 특화] 서랍장 특화+장식장 3. [벽/상판] 세라믹타일 4. 외산 싱크수전(한스그로헤)+절곡형 싱크볼 5. 독립형 렌지후드+인덕션(일반형) 6. [특화 조명기구] 주방 슬림라인등 7. [팬트리 특화] 폴딩도어+수납가구 특화	84B	6,699,000	669,900	6,029,100	
		2안	-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84C	913,000	91,300	821,700	
		3안	1. [주방특화] 플랩상부장+상부장 하부조명+ 액세서리 특화(미드웨이) 2. [아일랜드 특화] 서랍장 특화+장식장 3. [벽/상판] 세라믹타일 4. 외산 싱크수전(한스그로헤)+절곡형 싱크볼 5. 독립형 렌지후드+인덕션(일반형) 6. [특화 조명기구] 주방 슬림라인등	84C	6,556,000	655,600	5,900,400	
		2안	-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114A	1,353,000	135,300	1,217,700	
		3안	1. [주방특화] 플랩 상부장+상부장 하부조명+액세서리 특화(미드웨이) 2. [아일랜드 특화] 서랍장+ 바탑 3. [벽/상판] 세라믹타일 4. 외산 싱크수전(한스그로헤)+절곡형 싱크볼 5. 독립형 렌지후드 + 인덕션(일반형) 6. [특화 조명기구] 주방 우물천장+주방 슬림라인등+ 식탁레일등 7. [팬트리 특화] AL슬라이딩도어+수납가구 특화+시트판넬	114A	8,613,000	861,300	7,751,700	

		2안	-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114B	1,056,000	105,600	950,400	
		3안	1. [주방특화] 플랩상부장+상부장 하부조명+액세서리 특화(미드웨이) 2. [아일랜드 특화] 서랍장 특화+바탕+장식장 3. [벽/상판] 세라믹타일 4. 외산 싱크수전(한스그로헤+절곡형 싱크볼 5. 독립형 렌지후드 + 인덕션(일반형) 6. [특화 조명기구] 주방 슬림라인등 7. [팬트리 특화] 폴딩도어 + 수납가구 특화	114B	7,337,000	733,700	6,603,300	
	1. 기본형 주방가구 2. [벽]타일(300*600)+[상판]인조대리석 3. 국산 싱크수전+싱크볼 4. 침니형 렌지후드+가스쿡탑 5. 걸이형 액세서리 6. 기본 조명기구 7. 복도수납장	2안	-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114C	1,078,000	107,800	970,200	
		3안	1. [주방특화] 플랩 상부장+상부장 하부조명+액세서리 특화(미드웨이) 2. [아일랜드 특화] 서랍장+바탕+장식장 3. [벽/상판] 세라믹타일 4. 외산 싱크수전(한스그로헤+절곡형 싱크볼 5. 독립형 렌지후드 + 인덕션(일반형) 6. [특화 조명기구] 주방 슬림라인등 7. 복도장식장 특화	114C	9,053,000	905,300	8,147,700	

- 상기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택 가능합니다.
- 주방 특화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의 수량 및 적용되는 제품 사양은 변경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주방 특화의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 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적용·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수납장의 구성, 세부 형태(규격, 하드웨어, 액세서리 위치 및 사양)가 상이합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후드 및 싱크볼, 싱크수전의 제조사, 규격 및 세부사양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및 세라믹타일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나누기 및 패턴,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기본형(1안) 및 선택형(2,3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벽/상판 외의 품목은 기본형(1안)과 동일하게 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 기본형(1안) 및 선택형(2안) 선택 시 사출형 싱크볼과 걸이형 악세사리가 시공되며, 주방 상부장 하부조명은 미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특화조명기구의 형태 및 수량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설치되는 미드웨이 ACC는 타입별로 레이아웃, 규격,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주방 아일랜드에 서랍장이 추가 설치되며, 서랍장 내부에 설치되는 수저분리함이 고급형으로 변경됩니다. 타입별 서랍장의 규격 및 위치는 상이하며 옵션 미선택시 서랍장 1개소 설치(폭 축소, 전타입 W600 기준) 및 여닫이장으로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84B, 84C, 114A, 114B, 114C타입은 아일랜드에 상판 매립형 콘센트가 설치되며, 옵션 미선택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114A,B,C타입은 아일랜드에 바탕이 설치되며, 옵션 미선택시에는 바탕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타입별로 형태가 상이하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114A타입은 아일랜드 규격이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설치되는 상부장 하부조명은 가구 시공성 향상 및 전기/설비 간섭 구간으로 인해 본공사 시 규격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설치 위치 및 길이가 상이합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설치되는 상부장 하부조명은 가구 시공성 향상 및 전기/설비 간섭구간으로 인해 본공사 시 규격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설치 위치 및 길이가 상이합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설치되는 상부장 하부조명은 유지보수를 위해 상부에 점검구가 추가되며, 후면에 전선 일부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라이프업 스타일링 옵션의 조명특화의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일반형 및 고급형) 중 주방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에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라이프업 스타일링 옵션의 조명특화의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일반형 및 고급형)가 결정되며 주방 특화의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주방 특화조명기구는 주방 조명은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식탁등의 경우 평면(판상,타워)에 따라 디자인 및 수량, 적용 위치가 상이합니다..
- 주방 특화 옵션형(3안) 선택시 84A, 114A타입은 주방 우물천장 추가 및 레일 조명 형태의 식탁조명이 설치되며, 조명의 형태는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 주방 특화 옵션형(3안) 선택시 84B, 84C, 114B, 114C타입은 직부형 식탁 조명이 설치되며, 조명특화 옵션 선택시 거실 레일등과 연계되어 레일형 식탁조명으로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의 수량 및 적용되는 제품 사양은 변경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주방 특화 옵션 선택 시 주방 상부장 하부조명의 점검구 설치 유무 및 설치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기본형(1안) 및 선택형(2안) 선택 시 국산 절수기일체형싱크수전(진명홈바스/JMK 7200WS)이 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 옵션형(3안) 선택시 외산 싱크수전은 한스그로헤(#72800) 제품이 설치되며, 별도의 싱크절수기가 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 옵션형(3안) 선택시 독립형 후드는 아일랜드형(하츠/ISH-46S)제품이 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 옵션형(3안) 선택시 일반형 전기쿡탑(쿠쿠/CIR-FS301FB)이 설치되며, 가스쿡탑 설치를 고려한 가스배관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2) 주방 냉장고장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시)		
주방 냉장고장	냉장고/김치냉장고 상부장	2안	3컬럼 패키지 냉장고(냉동+냉장+김치)+키큰장	84A,B,C	5,350,000	535,000	4,815,000	
	냉장고/김치냉장고 상부장 + 키큰장	2-1안	3컬럼 패키지 냉장고(냉동+냉장+김치)+키큰장	114A	5,240,000	524,000	4,716,000	
				114B,C	5,270,000	527,000	4,743,000	
		2-2안	3컬럼 패키지 냉장고(냉동+냉장+김치) / 히든홈바 (슬라이드 어웨이 도어,장식장,세라믹 상판 포함)	114A,B,C	9,500,000	950,000	8,550,000	

- 상기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택 가능합니다.
- 주방 냉장고장 옵션 선택에 따라 수납장의 구성이 변경되며, 형태 및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 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적용-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컨버터블 냉장고 패키지는 냉동고, 냉장고, 김치냉장고로 구성되며, LG전자 제품(BC1L2AA, BC1F2AA, BC1K3AA)으로 설치됩니다. (도어 좌우 변경에 따라 모델명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컨버터블 냉장고 패키지의 패널은 글라스 재질의 미스크 크림화이트 색상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컨버터블 냉장고 패키지의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선택형(유상-2안) 컨버터블 냉장고 패키지 선택 시 설치되는 키큰장의 가구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 114A, 114B, 114C타입은 2-2안 선택시 슬라이드어웨이 하드웨어가 적용된 히든홈바가 추가로 적용되며, 세라믹 상판 및 악세사리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콘센트 설치 수량이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옵션 계약기간 경과 시 기본형(1-1안)인 냉장고 상부장 + 김치냉장고 상부장으로 설치됩니다.

3)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3안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시)	
쿡탑	가스쿡탑 - 경동나비엔 (GRB-5003)	2안	전기쿡탑 - 쿠쿠(CIR-FS301FB)	전타입	650,000	65,000	585,000	
		3안	전기쿡탑 - 디트리쉬(DPI-4320WK)		2,250,000	225,000	2,025,000	
식기세척기	미설치	2안	삼성전자(DW80F73Y1UEW)	전타입	1,100,000	110,000	990,000	
		3안	삼성전자(DW80F75K1UAP)		1,400,000	140,000	1,260,000	
전기오븐	미설치	2안	LG전자(MZ385EBT1)	전타입	450,000	45,000	405,000	
		3안	LG전자(MZ941CLCAT)		850,000	85,000	765,000	

- 상기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택 가능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 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적용-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쿡탑 선택형(2,3안) 선택 시에 가스쿡탑 설치를 고려한 가스배관은 설치되지만 주방 상판에 가스배관용 원형 타공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타입별 식기세척기의 전면 패널은 선택형 2안(일반형)은 에센셜화이트, 선택형 3안(고급형)은 새틴화이트 색상으로 설치되며, 패널 색상의 개별선택은 불가합니다.
- 제조사 사유로 인한 식기세척기 모델 변경 시 전면 패널 색상, 걸레받이 높이, 주변 하부장 도어 높이, 시공 디테일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기본형(1안) 선택 시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빌트인가전 유상옵션 품목들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자 진동, 소음 등으로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빌트인가전 유상옵션 품목들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도어와 추가선택품목 가전(쿡탑,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패널 색상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 미선택시 가전제품별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 선택형(3안) 선택시 전기쿡탑 선택형 2안(쿠쿠/CIR-FS301FB)이 설치되며, 선택형 3안(디트리쉬/DPI-4320WK)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4) 주방TV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시)	
주방TV	미설치	주방TV (13인치, AI음성인식)	전타입	600,000	60,000	540,000	

- 상기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택 가능합니다.
- 주방TV 제품 설치 시 제품 작동에 필요한 전기/통신 선들이 제품 후면에 노출됩니다.
- AI음성인식 주방TV의 경우 각 세대별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제어 및 음성인식이 가능하며(소비자가 별도 구축) 홈네트워크 연동(문열림, 세대현관 및 공동현관 확인 등)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4. 라이프업 스페이스 옵션(유상)

1) 비스포크 스튜디오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시)	
비스포크 스튜디오	침실1	침실1 장식장	84A	1,463,000	146,300	1,316,700	
	침실1,알파룸	비스포크 스튜디오 : 침실1/알파룸 통합+AL 슬라이딩 도어+조명기구 특화	114A	407,000	40,700	366,300	
	침실4	비스포크 스튜디오 : AL 슬라이딩 도어+시트판넬+조명기구 특화		968,000	96,800	871,200	
	침실1,2	비스포크 스튜디오 : 침실1/침실2 통합+장식장+AL 슬라이딩 도어+ 시트판넬+조명기구 특화	114B	3,938,000	393,800	3,544,200	
			114C	3,927,000	392,700	3,534,300	

- 상기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택 가능합니다.
- 114A,114B,114C 타입은 라이프업 스페이스 옵션 선택시 침실1,침실2 또는 침실1,알파룸 규격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 배선기구, 전자식 스위치, 환기디퓨저 및 등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L 슬라이딩 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의 디자인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AL 슬라이딩 도어는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비스포크 스튜디오 옵션 선택시, 침실 통합 및 특화사항들은 개별 선택옵션이 불가합니다.
- 114A 침실4 비스포크 스튜디오 옵션 미선택시 침실 목창호 및 침실 기본 침실 등기구가 설치됩니다.

5. 라이프업 바스 옵션(유상)

1) 욕실 특화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시)	
욕실 특화	1. 벽:타일(300*600/국산) /바닥:타일(300*300/국산) 2. 국산 수전 3. 국산 도기 4. 기본형 ACC 5. 기본형 샤워부스(욕실1) /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욕실2)	1. 벽:대형타일(600*1,200/유럽산) /바닥:타일(300*600/유럽산) 2. 수전 : 국산 (고급형, 색상특화) 3. 도기 : 외산 (파포니) 4. 욕조 측면 타일 마감 (욕실2) 5. 액세서리류 색상특화 / 샤워부스 프레임 색상특화(욕실1) / 욕조 에이프런 타일 마감(욕실2)	84A,B,C	4,829,000	482,900	4,346,100	
			114A,B,C	5,269,000	526,900	4,742,100	

- 상기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택 가능합니다.
- 욕실 특화의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전자비데는 욕실2에 1개소 설치됩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코너선반의 형태가 사각선반에서 원형선반으로 변경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여부에 따라 바닥 배수구의 위치, 규격,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벽/바닥 타일의 나누기 및 상세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등 욕실가구의 제조사, 색상, 규격, 형태 등 상세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은 타일 마감으로 변경되어 수납공간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시 세면대 배수관로 설치를 위해 가구 뒷판과 지판이 미설치되며 전면 가림판에 의해 수납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욕실 복합환풍기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시)	
욕실 복합환풍기	기본 환풍기	욕실복합환풍기 - 힘펠(FHD3-C150P_LUMI)	전타입	1,300,000	130,000	1,170,000	2개소(욕실1,2)

- 상기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택 가능합니다.
-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 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적용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선택형(2안)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 욕실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 욕실복합환풍기의 설치위치는 주택형에 따라 상이하며, 동일 주택형인 경우에도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설치개소는 세대별로 상이하며, 설치 가능한 욕실은 상기와 같습니다.

6. 시스템에어컨·청정환기

1) 시스템에어컨(천장형)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3안/4안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삼성전자)	미설치	2안	[2개소] 거실 + 침실1	84A,B	4,150,000	415,000	3,735,000	
		3안	[4개소]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7,180,000	718,000	6,462,000	
		2안	[2개소] 거실 + 침실1	84C	4,150,000	415,000	3,735,000	
		3안	[5개소]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8,540,000	854,000	7,686,000	
		2안	[3개소] 거실 + 주방 + 침실1	114A	5,890,000	589,000	5,301,000	
		3안	[5개소]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8,920,000	892,000	8,028,000	
		4안	[7개소]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알파룸		11,350,000	1,135,000	10,215,000	
		2안	[3개소] 거실 + 주방 + 침실1	114B	5,890,000	589,000	5,301,000	
		3안	[6개소]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9,980,000	998,000	8,982,000	
		2안	[3개소] 거실 + 주방 + 침실1	114C	5,890,000	589,000	5,301,000	
		3안	[5개소]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3 + 침실4		8,920,000	892,000	8,028,000	
		4안	[7개소]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 알파룸		11,350,000	1,135,000	10,215,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하 시스템에어컨) 선택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유상옵션 선택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스탠드형 에어컨(거실) 및 벽걸이형 에어컨(침실1) 설치를 고려한 매립형 냉매배관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어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단종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옵션품목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침실2, 침실3, 침실4, 알파룸에는 별도의 선풍기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은 실내기수량에 해당하는 무선리모컨을 제공합니다.

2) 시스템청정환기

구분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3안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시)	
시스템 청정환기 (삼성전자)	미설치	2안	[2개소] 거실 + 침실1	84A,B,C	1,980,000	198,000	1,782,000	
		3안	[4개소]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3,940,000	394,000	3,546,000	
		2안	[3개소] 거실 + 주방 + 침실1	114A	2,960,000	296,000	2,664,000	
		3안	[6개소]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5,900,000	590,000	5,310,000	
		2안	[3개소] 거실 + 주방 + 침실1	114B,C	2,960,000	296,000	2,664,000	
		3안	[5개소]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3 + 침실4		4,920,000	492,000	4,428,000	

- 상기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선택 가능합니다.
- 시스템 청정환기는 선택 옵션에 따른 설치 공간의 면적에 따라 공기 청정화 능력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시스템 청정환기 작동에 따른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환기 디퓨저의 설치 개수, 위치, 그리고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기구의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청정환기는 무선리모콘으로 제어하며, 장비 1대당 무선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 청정환기 사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 등 관리가 필요하며, 소모품 교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청정환기 옵션 선택 시, 각 실 시스템 청정환기 콘센트가 시공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단지 여건 등

※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공통	<p>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명칭은 '청주 푸르지오 씨엘리체'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아파트 명칭 및 펠넨임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동·호수의 표기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의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에 표시된 평면도, 실내투시도(색상), 단지배치도, 면적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본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층간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사업 부지면적 등은 법령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대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대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되, 위치의 지정이나 분할을 요구하지 않으며, 시설에 따라서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 예정임)의 다른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 수익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세대별 면적분할이나 위치지정

		<p>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경계 및 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기반시설의 공급시기 조정(전기, 상하수도, 통신 등)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입주지연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요구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도서 등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에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기준) : 최대 유효 지반가속도 0.216g으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의 Ⅴ에 해당함 (신 기준) : 내진 Ⅰ등급 (참고사항 : 2024.12.17. 등급공개기준이 변경됨)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현장여건에 따라 PC + RC 복합공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에 대한 금원 확보와 금액 관리는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예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홍보물 등의 내용과 공급계약서 상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견본주택, 단지모형, 각종 홍보물 상의 CG 등은 일부 내용이 사업시행인가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외부조경 및 외부마감 포함) 또는 홈페이지,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 및 조감도, 투시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옥상구조물의 형태, 입면색채, 경관조명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또는 지자체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2025년 04월 03일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지 주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추진 예정 중인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면적, 폭, 길이, 경사, 레벨, 개소 등이 분양홍보물(모형, CG, 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사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함.)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당해 지구 도시관리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등의 개설과 인접대지, 보행자도로, 연결녹지 등의 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기타 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전면조망, 생활권 등 생활이익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는 주변 기반/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반드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전 확인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및 추가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면한 인접 대지(공원 등) 및 도로 등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의 유무 및 사면의 종류, 노출 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인접한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조경식재, 휴게/놀이시설물, 포장 등)에 대한 분양 모형 및 CG는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설치하는 것이며, 향후 설계/시공과정에서 현장여건 및 인

		<p>허가청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 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초등학교는 인근 남성초등학교로 배정될 예정이나, 인근 분양 및 착공 준비 중인 사업들이 모두 추진되거나 관련 계획변경, 학급당인원 하향 조정 등에 따른 학생수용여건 변화 발생 시에는 학교배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통학구역은 입주 1년 전 최종 확정예정입니다. • 중학교 학생 배정계획은 5학교군 내 배치시설 확충을 통해 배치 가능, 고등학교 학생 배정계획은 청주시 및 도 내 전체 고등학교에 지원분산 배치가 가능합니다. 단, 학생 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계약 당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
<p>단지</p>	<p>단지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동 및 층, 향, 세대에 따라 일조 및 조망, 채광, 통풍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인근 인접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주차장용지, 공공기여용지 준주거용지 등 으로부터 소음 및 빛공해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공기여용지와 준주거용지 내 용도의 건축물이 건립될지 여부는 현재 정해진 바 없으니 필요시 지구단위계획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와 인접한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입주민 외 일반인들의 통행,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출입, 통행의 제한을 둘 수 없으며, 일반인들의 이용에 따른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경계와 공원 사이에는 경계웬스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채광/정북방향에 맞춰 적절한 높이의 건축 설계되었으나, 저층세대 등 수인한도 불만족 세대의 경우 계약자의 요청 시 관련 내용 설명 예정이며, 입주민 요청 시 픽셀형 반사경 설치를 사업주체에 요청하실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별도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저층 세대 외의 다른 계약자 및 입주자는 부가적인 영향(눈부심, 빛간섭 등)이 발생하여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 전기설비 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위치한 부대복리시설 등에 의해 소음, 악취로 인한 간섭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부대시설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위성안테나/야간경관조명/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면부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에서 도로의 설치 및 유지 보수, 개선 등의 목적으로 공사 등 관련 작업을 추진할 시 입주자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도로 및 인도(도시계획 도로)의 개보수공사 계획 수립과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당해 아파트 부지내 도로 및 인도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동시에 시행할 경우 입주자 측에서 공사 시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한 피 분양자, 소유자 또는 세입자, 이해관계자 등은 본 도로(보도 포함)를 대상으로 보상 청구 등 기타 관련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의 레벨차이는 옹벽 또는 조경석 쌓기 등으로 계획될 수 있으며, 설치여부, 위치, 규격 및 형태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단지 내 조경, 지상·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진입 램프는 본 공사 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등의 위치, 크기, 도입시설물 등은 사용편의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식재되는 수목의 수종 및 규격, 식재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웬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 인공지반 녹지 하부에는 우수침투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와 수목의 뿌리 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근층으로 자갈 배수층을 시공할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배수/방근 자재 등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등) 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간섭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하는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놀이/휴게/운동시설물 등 기타 시설물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키즈스테이션 및 외부휴게시설 등의 조경공간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에 의해 소음, 악취로 인한 간섭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 및 활용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행자출입구를 이용하는 보행자에 의해 생활소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의 레벨차이는 옹벽 또는 산석, 조경석쌓기 등으로 계획될 수 있으며, 설치여부, 위치, 구간, 선형, 공법, 규격 및 형태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옹벽 또는 산석, 조경석쌓기 등의 설치에 따라 단지 내 사용 가능한 조경면적 등 단지 내 사용 공간의 축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도시개발사업 내 위치하므로 대지경계측량, 확장측량 또는 인허가 결과에 따라 단지 외부보도 등이 대지경계선 내에 포함될 수 있으며, 대지경계선 내의 관리는 입주자에게 귀속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동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3,107,108,110동에 BI 사인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명으로 인해 빛 반사 및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진출입구에 인접한 세대는 지하주차장 차량 진출입구에 따라 소음 및 불빛에 의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행자출입구를 이용하는 보행자에 의해 생활소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 103, 104, 105, 110동 저층세대의 경우 문주 구조물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측벽에는 경관조명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안면방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1, 103, 105동 저층세대는 어린이집 및 다함께 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과 인접하여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0동 1층에 경로당(시니어클럽),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가 위치하여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6, 107, 108, 109동 저층세대는 선큰 및 티하우스, 외부실외기 설치 공간과 인접하여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세대(특히 저층부)는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차량출입구는 2개소이며, 단지 내에는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주위 회차로를 제외한 차 없는 보행자도로이며, 비상차량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단, 소방차, 이사차량, 폐기물 수거차량 등 지상이동 필요) • 단지 주출입구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불빛에 의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문주와 지하주차장 출입램프 구조물로 인한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사무소, 주차램프, 외부계단, 문주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탐라이트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 전기실 및 주차장, 급배기구 및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외부계단 등 부대복리시설의 장비(냉난방용 실외기, 배기팬 등)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특히 지상1층 선과과 타하우스 사이에 주민공동시설 실외기가 외부노출되어 설치됩니다 이로 인하여 아파트 인접세대에 소음, 분진 약취 및 미관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근세대의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해 등에 의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시설물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 단지 내 외 및 필로티 공간은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헨스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공원,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키즈스테이션 및 외부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키즈스테이션, 경비실 등의 실외기는 옥외 및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인접한 동의 세대에는 소음, 분진, 진동전달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내 수목식재, 생활폐기물 보관소등으로 인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보행로, 단지 내·외 도로에 의해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보관소의 약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출입구, 부대시설, 문주, 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제한 및 침해될 수 있으며, 마감재료 특성상 반사,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 인접한 동은 차량 진출입시 발생하는 소음 및 불빛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주변 세대는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동별, 라인별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속도 등은 관계법규가 정한 기준 및 심의조건 등에 맞추어 계획되었으며, 층수 및 사용세대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 동별, 라인별로 사용인수 대비 대수 및 인승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층수 차이로 인해 일부 세대 침실은 기계실과 인접하여 배치됨) 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곳곳에 외부계단 및 외부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인근세대의 경우 유동인구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위치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동측에 하천(미평천)이 있어, 동측에 면한 아파트의 경우 유동인구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장식물의 높이 및 사이즈와 태양광 패널의 크기 및 위치 등은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시설의 통합 시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사전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위치 : 중계장치 - 옥상층(101, 103, 105, 106, 108, 109, 110동), 지하1층 동통신실(101, 103, 104, 105, 106, 108, 109, 110동)
 - 옥외안테나: 옥상층(101, 103, 105, 106, 108, 109, 110동)
- 동별, 라인별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속도 등은 관계법규가 정한 기준 및 심의조건 등에 맞추어 계획되었으며, 층수 및 사용세대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 동별, 라인별로 사용인수 대비 대수 및 인승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층수 차이로 인해 일부 세대 침실은 기계실과 인접하여 배치됨) 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경우 평면구성에 따라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하여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측벽에 피뢰침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홀(엘리베이터홀)은 각 세대간에 공유하는 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위치별로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이 있어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조합, 층차이 등의 이유로 세대 앞 엘리베이터 홀 면적(공용면적)은 동, 호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G, 모형, 사인물(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등) 등은 심의 및 인·허가 승인자료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외부 창호의 형태, 재질, 크기, 색상 및 루버의 위치 및 크기 등은 심의 의견 및 인·허가 승인 조건, 공사여건, 특화디자인 등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기타 외부 시설물(문주, 경비실, D/A, 외부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등)의 외관디자인, 외부색채와 마감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사용성 및 시공성 개선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변경사항이 아닌 경우 별도 입주자 동의절차 없이 향후 보완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분양주택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외부 및 공용부 마감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요구 등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축벽과 일부 옥상구조물에 경관조명 또는 조명형 B.I 및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수 있으며, 해당동에 인접한 상부층 세대는 빛 공해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고, 특히 옥탑최상부에는 경관조명이 설치될수 있어 상층세대는 빛공해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명칭, 외벽 로고, 동표시 부착물과 그래픽의 위치와 수량은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분양 당시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고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옥상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 변경 또는 옥상구조물 지지를 위한 기둥이 추가 시공될 수 있으며, 옥상 구조물 상부는 도장 마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의 옥상구조물, 옥상난간, 파라펫, 세대난간 등의 위치, 형태, 색상, 마감상세 등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 부착물은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분양당시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지하 동출입구 등의 공용부분은 동 형태에 따라 규모, 마감재, 디자인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 등(설치 시)의 지상 돌출물이 각종 지상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분양 홍보물(모형/배치도/분양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부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 조경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대지경계 주위 전선 지중화 작업이 미확정된 상태로, 향후 입주 시 지상에 전신주 및 전선이 위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주 전후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는 범죄예방 및 입주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설치되므로 설치 및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랍니다. • 계단실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환기를 위하여 일부 개폐가 가능한 창호를 설치시 이 경우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그 위치는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인입용 한전패드(아파트 및 판매시설용), 전기인입 맨홀, 통신인입 맨홀이 지상1층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항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옥상 및 입면부에 설치되는 태양광패널은 본 공사 시 형태 변경 또는 설치 위치 및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친환경 인증기준 변경 시 발전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친환경 인증절차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면에 태양광패널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세대 창호주변의 외부벽체에도 설치될 수 있고 이럴경우 외부 조망시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 외부 시설물의 디자인 및 색채, 마감재, 사인물 설치위치 등은 디자인 및 사용성, 시공성 개선 등의 사유로 분양 이후에 해당 인허가청 협의를 통하여 디자인 보완 및 계획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본 분양주택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p>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실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의 주문주와 부출입구의 부문주의 형태, 디자인, 마감재 등은 현장 여건이나 구조검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옥상구조물, 파라펫 등의 형태는 공사여건에 따라 해당관청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진입 램프는 본 공사 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p>주차장 (2,337대 / 근린생활시설 7대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 세대에 대한 지상 및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 동과 인접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계획상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의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으로 승하차 시 이용에 불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공동주택(아파트)은 지하주차장으로 설치되며, 주출입구 인근의 지상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전용으로 인지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통행구간 유효 높이 지하1층 2.7m이상, 지하2층 2.3m이며, 주차공간은 전체 2.1m 이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택배차량은 지하1층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며, 해당층에 무인택배함이 계획되었습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상으로부터 지하 2개층으로, 동별 인접한 주차대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북동측에는 주차장용지 조성계획이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차량진출입 차단기,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하주차장 데크플레이트(철판) 혹은 PC구간은 별도 마감(도장/뽕칠 등)을 하지 않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과 램프 구조물 등의 형태, 규모, 마감재, 외관디자인 등은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특화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공간은 공동주택의 기계설비를 위한 각종 설비용 배관, 가스배관 및 덕트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우수저류조가 설치될 예정이며, 우수저류조의 위치 및 개소, 면적은 현장 여건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전기차충전설비의 수량 및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정기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인근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은 동별, 라인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인접한 호실의 경우 택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세대창고가 계획되어있으며, 각 세대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대수, 충전공간은 주차대수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 전기차 주차구획 및 충전설비는 일부공간에 구획되어 있으며, 각 세대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p>공용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단지 내에 지역압입기 등이 설치 또는 미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D/A(설비환기구)는 실시공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EV홀 및 세대창고에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경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관리비에

		<p>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주차장,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공간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기계설비를 위한 각종 설비용 배관, 가스배관 및 덕트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각동 지하PIT층 및 지하주차장에는 각종 집수정이 설치되며, 집수정 내 설치된 펌프의 동작으로 인하여 인접세대 및 인근에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해당 시설에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코니 확장 선택시 난간이 필요한 일부 실에는 철재난간 창호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동 창호는 구조 계산 결과에 따라 본공사 시 형태 및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외부 그릴 모양은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창호의 사양(창틀, 유리 포함)은 내풍압, 구조검토, 인허가 및 각 종 인증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기본 제공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계약 체결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평면도와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 세대가 기본형(비확장) 세대인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발코니는 비난방구간으로 설치되는 수전 및 배수배관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해야합니다.
가구,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관, 신발장,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과 다용도실은 마감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풍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사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기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로 인하여 주방가구 상부장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제공 및 옵션제공품목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은 같은 제품일지라도 등급신청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외부에 시공되는 공장 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전기·기계설비

- 단지 내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됩니다.
- 필로티 위층 및 최하층, 최상층 세대는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연결된 노출 온수 파이프는 보온재를 시공하지 않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인근 온도조절기(거실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디퓨저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를 위한 급기 및 배기용 디퓨저가 거실 및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기용 덕트호스는 유연성이 있는 재질이며, 시공 시 덕트의 재질 및 모양은 타원, 사각 등 다양한 형태로 변경될 수 있으며 타원, 사각, 휨 등의 여러 형태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에 따른 입면, 창호, 전등, 환기구의 위치 및 크기,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급기 및 배기용 디퓨저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설물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배기로 인하여 소음, 진동 및 인접세대의 냄새 유입 등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반드시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에 세대 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설치(견본주택에는 미설치되어 있음)됩니다. 실외기실은 별도의 천장마감이 없으며, 이로 인해 환기용 장비 및 덕트, 에어컨 배관, 입상배관 및 벽체관통구간 등이 노출되어 미관에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공간 및 벽체사용에 제약이 있으며, 설치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기장비의 사양, 제조사, 위치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수 및 오수 처리를 위한 낙차공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1층)는 저층부 세대의 배수배관 통기를 위한 입상배관이 발코니에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각 동 최하층 세대에는 상부층 세대들의 배수를 위한 입상관이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욕실배관이 해당 층 하부에 설치되는 층하배관방식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추후 상부층 세대 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부층 세대 욕실 내 점검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샤워부스 및 욕조하부, 발코니 및 일부 싱크대 하부 공간 등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냉매배관은 거실, 침실1에 제공됩니다. 천장형 시스템어어컨은 유상유선 품목으로, 유상유선 선택 시 해당 냉매배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냉매배관은 천장형 제품을 위한 배관이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민이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직접 설치하기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에 실외기 2단 설치는 불가합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의 설치 부위는 별도의 마감재로 설치될 수 있으며 매립배관의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외기실 루버는 필히 닫힘구조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동파 및 각종 하자는 입주민께서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해야 합니다.
-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는 설비 환기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서 세대로 공급되는 가스배관은 외벽에 노출 설치되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계량기 설치에 따라 발코니,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내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마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계량기 설치위치에 따라 가전 상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건조기 2단 적재 불가 등)
- 세대별 도시가스, 급수사용량은 원격검침을 통하여 방재실로 제공될 예정이며, 검침자료는 도시가스 및 급수 등 공급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가스보일러 AS을 위해 보일러 정면에 설치된 세탁기 및 건조기의 해체 및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스보일러 연도 및 가스배관이 다용도실을 관통하여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가스보일러 소음, 진동이 인접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별 급수 입상배관은 각 동 코어별 PD 내 동일한 공용배관으로 공급됩니다. 다만, 실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세대별 공용 또는 단독 입상배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실외기실, 발코니 등에 완강기 설치로 인한 공간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임의 철거,

- 제거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세대에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동체 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에 설치됩니다. (1층 필로티인 경우 2층 및 최상층 세대 설치, 1~2층 필로티인 경우 최상층 세대만 설치됩니다.)
 -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유지 등에 따라 미 입주시에도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분전반 차단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법 및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벽걸이TV 설치시 전선, 케이블, 통합콘센트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 쿡탑 용량은 설계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설계 용량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 용량 증설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연출용 조명, 소화기, 시각경보장치 등은 세대 홍보, 연출과 홍보관 소방안전을 위한 것으로 배관, 배선을 포함하여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류는 본 공사 시 조도 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콘센트, 스위치 및 조명,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 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건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건본주택 세대 內 안내 되어 있는 일반형 스마트스위치의 POP 이미지는 샘플 이미지이며, 공간 및 조명 회로에 따라 버튼 수량은 상이합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침실 내 도어 후면 및 벽면 등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유상옵션 및 평면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평면옵션 선택에 따른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 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 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가전제품별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실, 안방 등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내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세대에 한하여 제공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무상 제공 기간 종료 후에는 당사 또는 서비스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가 유상으로 전환되거나 제공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난방,환기,쿡탑열원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가전사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연계되는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으로 연동되는 홈넷 및 3rd Party 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 연계되는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기능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 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푸르지오

		<p>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과정이 필요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연동 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은 9종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이며, 모델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공 기능도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는 삼성 SmartThings 앱을 통해 제공되며, 안드로이드 및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가능한 운영체제 및 기기 사양은 Google 또는 Apple의 정책, 운영체제 업데이트, 서비스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및 최신 정보는 삼성전자 홈페이지 (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 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댁내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소비자 별도 구축). 또한 삼성전자의 SmartThings 앱을 통한 세대내의 각 종 홈 넷 기기의 제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App과 연계되는 제휴서비스는 당사와 해당사의 계약기간 혹은 운영정책 등에 의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의 연동은 당사의 개별 일정이나 해당 사의 정책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플랫폼 제공업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천장 높이는 설비자재와의 간섭 등으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종류 :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경비실, 주민공동시설(수영장,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GX클럽,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라운지스튜디오(독서실), 샤워실(사우나)등),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시니어클럽),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등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조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제공 가구 및 마감재 등은 실시공시 자재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동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고, 기타 집기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동별 배치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위한 동선 및 접근성이 상이하며,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면적 등은 각 단지별 규모에 따라 각각 계획되었으므로 단지 간 동일한 구성, 면적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구 및 내부 바닥에 경사(슬로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내 모형 및 카탈로그, CG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이미지 자료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대복리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후 실시계획 및 용도에 따라 부대시설의 명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및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의해 주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는 동에 인접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동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및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의해 주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급수, 급탕, 난방, 가스요금 등은 입주주민의 공동요금으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천정 속에는 기준층 세대의 각종 배수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p>필요한 설비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 공용부 상부 천정속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 가스배관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해당 시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제공 가구 및 마감재 등은 실시공시 자재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등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고, 기타 집기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사용검사 전 사용이 불가하며 사업주체가 사용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실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구 및 내부 바닥에 경사(슬로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분양안내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조,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부대시설의 실외기실 및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의해 주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다른 단지과 비교 등을 이유로 추가설치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에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 등의 사양은 각 시설의 기능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들은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의 사양 등에 대한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D/A(설비환기)는 실시공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통행로와 인접한 구간에는 차폐막이 설치되나 소음피해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으로 인해 조망권 침해 및 소음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각 실별 용도에 따라 운영되며, 운영상 인접한 실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국공립어린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1,351세대로,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본 아파트 단지 복리시설 내에는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에서 해당 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와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해당 협약 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거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간 협약을 통해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해당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관련 법규 및 규정, 관할 행정기관 및 관할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30~7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소 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배정이후 잔여 인원은 입주민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p>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 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청주시(청주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상기 안내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단지의 세대수 기준, 입주인 자녀 우선 입소 비율 등을 포함한 관계 법령, 지자체 조례 및 교육부 지침이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다함께돌봄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1,351세대로, 본 아파트 단지 복리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55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공간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에서 해당 센터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로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해당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와 체결할 예정이고,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해당 협약 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해당 단지의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가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지역 돌봄수요 등을 고려할 때 복리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거나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해당 센터의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간 협약을 통해 단지 복리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해당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관련 법규 및 규정, 관할 행정기관의 지침에 따라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인 자녀에게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의 30~7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인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단지 입주인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소 후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는 향후 청주시(청주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센터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및 사용료,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상기 안내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대상 단지의 세대수 기준, 입주인 자녀 우선 입소 비율 등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조례·지침이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p>근린생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내·외·옥상부 공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101,110동 저층세대는 단지 내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에 의해 소음, 악취로 인한 간섭 및 조망권, 일조권, 환기권, 소음피해,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실 및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의해 주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건본주택 및 홍보물과 관련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제작됩니다. • 건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과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분양 이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건립 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건본주택 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 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각종 광고, 인쇄물(카탈로그 등) 및 홈페이지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차도, 공원, 녹지, 공공공지, 유수지, 공동주택용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사업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인쇄물(카탈로그 등) 및 홈페이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 계약 전 건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인쇄물(카탈로그 등) 및 홈페이지는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사업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 홍보물(카탈로그, 홈페이지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공급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CG에 적용된 B.I 위치 및 개소와 주동 입면디자인, 색채, 마감재, 옥상구조물, 외부 놀이시설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자료이며,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CG등에 적용된 실명칭은 실사용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주택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건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배치도의 대지경계선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진행 중 아파트 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 성능, 상품개선, 하자예방, 설계 및 도면표현의 오류 정정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서가 징구되어야 하는 사항(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1,2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 해제 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지 인근에 각종 시설(장례식장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계약 전 현장 확인을 통해 주변 환경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공동주택 형별 마감사양 등은 형별 특성에 따라 상이함으로 제시한 옵션사항이외 마감사양 등의 유무상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에 사용된 단지명과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부재의

- 단면 및 주근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사업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하향식 피난기구가 설치됨에 따라 별도의 대피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84B,C, 114B,C타입 드레스룸에는 별도의 환기창이 없음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본 사업지 준공 관련하여, 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면적이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중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 여건 및 본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항, 성능, 설치유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설치
전기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6-101-0001500 호	₩ 535,024,0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 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대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1566-9009)

■ 관리형토지신탁에 관한 유의사항

수분양자는, 본 공급목적물이 토지신탁사업(이하 “본 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으로서, 매도자 겸 수탁자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위탁자 겸 수익자 주식회사 청주글로벌, 시공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이 체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다.

- (1)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 제한 비율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 등에 따라 담보대출이 제한(축소)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축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2)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 등 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다.
- (3) 분양대금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지정·통보하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전액 입금되어야 하며, 동 계좌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계좌이체 방식)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유효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4) 본 공급목적물이 신축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책임 및 의무(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는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는 위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5) 사업은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신탁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매도인 겸 수탁자의 모든 권리, 의무(불법행위에 의한 책임 및 법적책임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는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아울러 본 분양계약에 기한 수탁자(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도 본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는 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동의한다.
- (6) 본 사업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가 신탁을 받아 진행하는 신탁사업인바, 본 분양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등이 되어 매도인으로서 수탁자가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 및 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은 위 반환 당시 현존하는 신탁재산 중 수탁자가 신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부담한 손해, 손실 및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수탁자의 신탁계약상 업무범위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고, 매수인이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금원은 실질적 사업시행자인 위탁자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매수인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며, 매수인은 등기부로 공시되는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7) 하자보수 이행책임(미·오시공 포함)과 관련하여 매수자(수분양자)는 수탁자(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모든 시공상의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사(주식회사 대우건설)에게 있으며, 매수인은 시공사 교체(건축물 브랜드, 명칭 교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사전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8) 위탁자 및/또는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수탁자의 승인없이 단독으로 또는 수분양자와 합의하여 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본 분양계약의 내용·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연체료·위약금 채무 등을 감면하는 행위,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 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수분양자에게 본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본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등 일체를 할 수 없으며, 본 분양계약상 수탁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수탁자를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한하여 수탁자를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수분양자가 본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지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위반사항 시정촉구통지
 2. 수분양자에 대한 본 분양목적물의 입주지정일(또는 입주지정기간) 통지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회사명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케이제이엔지니어링	(주)자람앤수엔지니어링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감리금액	5,877,946,800	867,472,900	1,193,769,000	418,000,000
사업자등록번호	229-81-07980	127-86-48564	138-81-76949	301-81-31079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8조,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서울시 분당구 대치동 A1 BL 공동주택
 2. 신청자 :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
 3. 대지위치 : 충청북도 영주시 서원로 64-3번지 일원
 4. 성능등급 : 가. 소용량인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환경 개선등급	★	18. 생활환경 개선등급	★★★
2. 생활환경 개선등급	★	19. 생활환경 개선등급	★★
3. 내열성 강화등급	★★★	20. 생활환경 개선등급	-
4. 소용량인 등급	★	21. 가연성 등급	★
5. 소용량인 등급	★	22. 소용량인 등급	★
6. 소용량인 등급	★	23. 소용량인 등급	-

가. 소용량인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18. 내구성	★★
2. 가연성	★★★	19. 내구성	-
3. 수리용이성	★★	20. 내구성	★★
4. 수리용이성	★★	21. 가연성	★★

나. 규모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18. 내구성	★★
2. 가연성	★★★	19. 내구성	-
3. 수리용이성	★★	20. 내구성	★★
4. 수리용이성	★★	21. 가연성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환경 개선등급	-	18. 생활환경 개선등급	★★★
2. 생활환경 개선등급	-	19. 생활환경 개선등급	★★
3. 생활환경 개선등급	-	20. 생활환경 개선등급	★★★
4. 생활환경 개선등급	-	21. 생활환경 개선등급	★★★★
5. 생활환경 개선등급	-	22. 생활환경 개선등급	★★★★
6. 생활환경 개선등급	-	23. 생활환경 개선등급	★★★★
7. 생활환경 개선등급	-	24. 생활환경 개선등급	★★★★
8. 생활환경 개선등급	-	25. 생활환경 개선등급	★★★★
9. 생활환경 개선등급	-	26. 생활환경 개선등급	★★★★
10. 생활환경 개선등급	-	27. 생활환경 개선등급	★★★★
11. 생활환경 개선등급	-	28. 생활환경 개선등급	★★★★
12. 생활환경 개선등급	-	29. 생활환경 개선등급	★★★★
13. 생활환경 개선등급	-	30. 생활환경 개선등급	★★★★
14. 생활환경 개선등급	-	31. 생활환경 개선등급	★★★★
15. 생활환경 개선등급	-	32. 생활환경 개선등급	★★★★
16. 생활환경 개선등급	-	33. 생활환경 개선등급	★★★★
17. 생활환경 개선등급	-	34. 생활환경 개선등급	★★★★
18. 생활환경 개선등급	-	35. 생활환경 개선등급	★★★★
19. 생활환경 개선등급	-	36. 생활환경 개선등급	★★★★
20. 생활환경 개선등급	-	37. 생활환경 개선등급	★★★★
21. 생활환경 개선등급	-	38. 생활환경 개선등급	★★★★
22. 생활환경 개선등급	-	39. 생활환경 개선등급	★★★★
23. 생활환경 개선등급	-	40. 생활환경 개선등급	★★★★
24. 생활환경 개선등급	-	41. 생활환경 개선등급	★★★★
25. 생활환경 개선등급	-	42. 생활환경 개선등급	★★★★
26. 생활환경 개선등급	-	43. 생활환경 개선등급	★★★★
27. 생활환경 개선등급	-	44. 생활환경 개선등급	★★★★
28. 생활환경 개선등급	-	45. 생활환경 개선등급	★★★★
29. 생활환경 개선등급	-	46. 생활환경 개선등급	★★★★
30. 생활환경 개선등급	-	47. 생활환경 개선등급	★★★★
31. 생활환경 개선등급	-	48. 생활환경 개선등급	★★★★
32. 생활환경 개선등급	-	49. 생활환경 개선등급	★★★★
33. 생활환경 개선등급	-	50. 생활환경 개선등급	★★★★
34. 생활환경 개선등급	-	51. 생활환경 개선등급	★★★★
35. 생활환경 개선등급	-	52. 생활환경 개선등급	★★★★
36. 생활환경 개선등급	-	53. 생활환경 개선등급	★★★★
37. 생활환경 개선등급	-	54. 생활환경 개선등급	★★★★
38. 생활환경 개선등급	-	55. 생활환경 개선등급	★★★★
39. 생활환경 개선등급	-	56. 생활환경 개선등급	★★★★
40. 생활환경 개선등급	-	57. 생활환경 개선등급	★★★★
41. 생활환경 개선등급	-	58. 생활환경 개선등급	★★★★
42. 생활환경 개선등급	-	59. 생활환경 개선등급	★★★★
43. 생활환경 개선등급	-	60. 생활환경 개선등급	★★★★
44. 생활환경 개선등급	-	61. 생활환경 개선등급	★★★★
45. 생활환경 개선등급	-	62. 생활환경 개선등급	★★★★
46. 생활환경 개선등급	-	63. 생활환경 개선등급	★★★★
47. 생활환경 개선등급	-	64. 생활환경 개선등급	★★★★
48. 생활환경 개선등급	-	65. 생활환경 개선등급	★★★★
49. 생활환경 개선등급	-	66. 생활환경 개선등급	★★★★
50. 생활환경 개선등급	-	67. 생활환경 개선등급	★★★★
51. 생활환경 개선등급	-	68. 생활환경 개선등급	★★★★
52. 생활환경 개선등급	-	69. 생활환경 개선등급	★★★★
53. 생활환경 개선등급	-	70. 생활환경 개선등급	★★★★
54. 생활환경 개선등급	-	71. 생활환경 개선등급	★★★★
55. 생활환경 개선등급	-	72. 생활환경 개선등급	★★★★
56. 생활환경 개선등급	-	73. 생활환경 개선등급	★★★★
57. 생활환경 개선등급	-	74. 생활환경 개선등급	★★★★
58. 생활환경 개선등급	-	75. 생활환경 개선등급	★★★★
59. 생활환경 개선등급	-	76. 생활환경 개선등급	★★★★
60. 생활환경 개선등급	-	77. 생활환경 개선등급	★★★★
61. 생활환경 개선등급	-	78. 생활환경 개선등급	★★★★
62. 생활환경 개선등급	-	79. 생활환경 개선등급	★★★★
63. 생활환경 개선등급	-	80. 생활환경 개선등급	★★★★
64. 생활환경 개선등급	-	81. 생활환경 개선등급	★★★★
65. 생활환경 개선등급	-	82. 생활환경 개선등급	★★★★
66. 생활환경 개선등급	-	83. 생활환경 개선등급	★★★★
67. 생활환경 개선등급	-	84. 생활환경 개선등급	★★★★
68. 생활환경 개선등급	-	85. 생활환경 개선등급	★★★★
69. 생활환경 개선등급	-	86. 생활환경 개선등급	★★★★
70. 생활환경 개선등급	-	87. 생활환경 개선등급	★★★★
71. 생활환경 개선등급	-	88. 생활환경 개선등급	★★★★
72. 생활환경 개선등급	-	89. 생활환경 개선등급	★★★★
73. 생활환경 개선등급	-	90. 생활환경 개선등급	★★★★
74. 생활환경 개선등급	-	91. 생활환경 개선등급	★★★★
75. 생활환경 개선등급	-	92. 생활환경 개선등급	★★★★
76. 생활환경 개선등급	-	93. 생활환경 개선등급	★★★★
77. 생활환경 개선등급	-	94. 생활환경 개선등급	★★★★
78. 생활환경 개선등급	-	95. 생활환경 개선등급	★★★★
79. 생활환경 개선등급	-	96. 생활환경 개선등급	★★★★
80. 생활환경 개선등급	-	97. 생활환경 개선등급	★★★★
81. 생활환경 개선등급	-	98. 생활환경 개선등급	★★★★
82. 생활환경 개선등급	-	99. 생활환경 개선등급	★★★★
83. 생활환경 개선등급	-	100. 생활환경 개선등급	★★★★

2026년 03월 19일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명 : 영주시 분당리동지구 A1 BL 공동주택
 건축주 :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
 준공(예정)일 : 2029. 02. 28.
 주소 : 충청북도 영주시 서원로 64-3번지 일원
 면적 : 지 200㎡, 지상 200㎡
 건축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제일엔지니어링

인증기호 : G-SEED-P-2026-0280-6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6.03.19 ~ 사용승인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 2026.03.19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령 제 2025-850호, 인준가이드(2025.12.10.))

이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받았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한국부동산원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준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명 : 영주시 분당리동지구 A1 BL 공동주택
 준공(예정)일 : 2029.02.28
 주소 : 충청북도 영주시 서원로 64-3번지 일원
 면적 : 지 200㎡ / 지상 200㎡
 건축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제일엔지니어링

인증기호 : 20-주-에-14-2020
 평가자 : 정희영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인준일로부터
 인증일자 : 2026.03.19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국토교통부령 제 2025-850호, 인준가이드(2025.12.10.))

이 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구분	등급	에너지소비효율 (kWh/㎡·년)	등급	에너지소비효율 (kWh/㎡·년)	등급	에너지소비효율 (kWh/㎡·년)
1등급	0.0	0.0	4등급	45.0	7등급	12.0
2등급	33.0	50.0	5등급	24.0	8등급	8.0
3등급	80.0	55.0	6등급	17.0	9등급	3.0
4등급	7.0	9.5	7등급	8.0	10등급	1.0
5등급	11.7	102.0	8등급	107.5	11등급	23.7

에너지 수요별 평가결과

구분	등급	에너지소비효율 (kWh/㎡·년)	등급	에너지소비효율 (kWh/㎡·년)	등급	에너지소비효율 (kWh/㎡·년)
1등급	0.0	0.0	4등급	45.0	7등급	12.0
2등급	33.0	50.0	5등급	24.0	8등급	8.0
3등급	80.0	55.0	6등급	17.0	9등급	3.0
4등급	7.0	9.5	7등급	8.0	10등급	1.0
5등급	11.7	102.0	8등급	107.5	11등급	23.7

2026년 03월 09일

한국부동산원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비인증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을 계획이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시행수탁자(사업주체)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호	(주)코람코자산신탁	(주)청주글로벌	(주)대우건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1, 4층 (삼성동, 아이콘 삼성)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78, 104-2호(미평동)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에이동 (을지로4가, 을지트윈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11-2359837	150111-0330857	110111-2137895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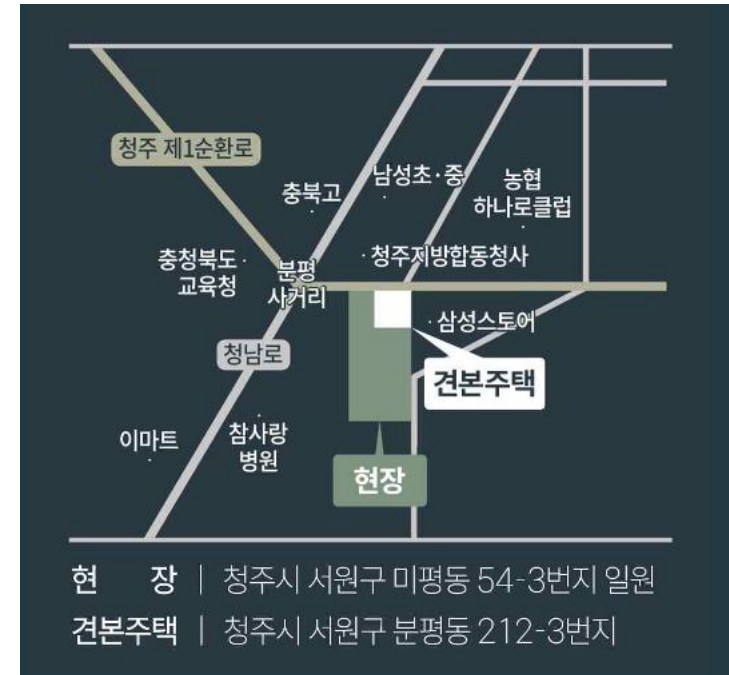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prugio.com/hb/2026/cieliche>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청주 푸르지오 씨엘리체』 견본주택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12-3번지) | ☎1566-8982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 등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 약관에 따르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2026.04.10.(금)	
견본주택 오픈	2026.04.10.(금)	
특별공급 접수일	2026.04.20.(월)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2026.04.21.(화)
	2순위 접수일	2026.04.22.(수)
당첨자발표일	2026.04.30.(목)	
사전 서류접수	2026.05.02.(토) ~ 2026.05.06.(수)	
계약체결	2026.05.11.(월) ~ 2026.05.14.(목)	



분양문의 1566-8982

견본주택 :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12-3번지

홈페이지 : <https://www.prugio.com/hb/2026/cieliche>

현 장 |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54-3번지 일원

견본주택 |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12-3번지